

세무와회계저널  
제18권 제1호 2017년 2월 pp.171~199  
한국세무학회

## 재무보고의 질과의 관련성 검증을 통한 비정상감사보수 속성에 관한 연구

- 추가 감사노력 투하여부에 따른 초과 감사보수의 의미 -

오광욱\*

<요 약>

본 연구는 비정상 감사보수가 가지는 질적 특성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검증한다. 첫째, 감사인이 초과 감사보수를 받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하하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하는 경우 초과감사보수와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발생액의 질)과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이 초과 감사보수를 받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하하는 구간에서 초과 감사보수와 재무보고의 질(financial reporting quality) 간의 관계는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초과 감사보수가 경제적 유대 관계이외에도 추가적인 감사 생산원가, 감사위험과 같은 감사보수(시간)모형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특유 감사요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과감사보수의 해석에 대한 경제적 유대관계 관점과 기업 특유의 감사원가 및 위험요인이라는 두 가지 견해에 대한 해석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특히 Higgs and Skantz(2006)의 견해와 같이 초과 감사보수가 경제적 유대관계나 기업 특유의 위험과 중 어느 한 가지 속성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혼재된 속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비정상 감사보수, 초과감사시간,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발생액의 질

\*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글로벌 경영학부 부교수, avnini92@korea.ac.kr

논문접수일 2016년 12월 23일      게재확정일 2017년 2월 4일

## I. 서 론

본 연구는 최근 연구에서 제안되고 있는 비정상감사보수의 해석에 기반을 두고, 감사인의 노력이 수반되는 비정상보수와 그렇지 않은 비정상보수에 따라 재무보고의 질(financial reporting quality)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 한다. 구체적으로 재무보고의 질은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측정되는 발생액의 질(accruals quality), 그리고 회계이익-주가수익률(earnings-return)관계에 기반을 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accounting comparability)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최근 Hribar et al.(2014)와 Doogar et al.(2015)의 연구들은 감사인이 받는 감사보수 결정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비정상 보수의 의미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해석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 예를 들어 Frankel et al.(2002), Hope et al.(2009), Choi et al.(2010)에서는 정상 수준을 넘는 비정상 보수를 감사인-기업간의 경제적 유착관계(economic bonding) 내지는 그로 인한 독립성 훼손 가능성(impairment of auditors' independence)을 의미하는 변수로 해석한다. 한편, Hribar et al.(2014), Higgs and Skantz(2006)은 비정상 감사보수가 감사인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감사 생산원가를 요구하는 변수로 해석한다. 또한 감사생산원가는 감사보수 모형으로 통제되지 않는 특유 위험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며, 특히 초과감사보수는 경제적 유대관계만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다. 즉, 초과 비정상감사보수에 국한하여 볼 때, Frankel et al.(2002), Hope et al.(2009), Choi et al.(2010)등의 견해와 같이 경제적 유대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유 위험 요인에 의해 요구되는 추가 감사생산 원가 요인도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Doogar et al.(2015)은 비정상보수의 함의(implication)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토대로 비정상보수의 구성요소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비정상보수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① 감사보수 결정요인 중 위험지표로 관측되지 않는 감사위험(unobserved audit risk), ② 감사보수 결정요인 이외의 추가적인 감사원가(unobserved audit production cost), 그리고 ③ 감사인-기업간의 경제적 유착(economic bonding) 요인 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가운데 어떤 요인이 비정상보수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인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다른 요인들 보다 감사인-기업간의 경제적 유착요인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Hribar et al.(2014)의 주장과 유사하게 비정상 보수는 개별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에 의한 감사위험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추가 감사원가의 대용치로 보았다. 그리고 비정상 위험과 원가가 감사노력에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감사시간 자료가 없는 미국 자료의 한계 상 실제 감사노력을 활용한 분석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감사보수, 비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인이 적정 수준 이상·이하의 감사보수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하하는지를 살펴본다. 만일 적정 수준 이상의 감사보수와 적정 수준 이상의 감사노력이 관련성을 보인다면, 감사인이 받는 추가적인 감사보수는 경제적 유대관계

를 의미하는 변수로만 해석하긴 어렵다. 초과감사보수의 속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감사인이 추가적인 노력을 투하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으로 표본을 구분하고 각 표본 별로 감사인의 초과 감사보수가 재무정보의 질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검증한다. 이를 통해 Frankel et al.(2002), Hope et al.(2009), Choi et al.(2010)의 견해처럼 초과 감사보수가 경제적 유착관계를 의미하는 변수로 볼 수 있는지 Doogar et al.(2015), Hribar et al.(2014), Higgs and Skantz(2006)의 견해와 같이 감사노력을 요구하는 특유위험 또는 Ettredge and Greenburg(1990)의 견해처럼 추가 감사노력 투입에 따른 감사의 비효율성(inefficiency)이 같이 혼재된 변수인지 파악할 수 있다. 분석에 이용된 재무정보의 질(financial reporting quality)은 발생액의 질(accruals quality) (Dechow and Dichev 2002 ; (Francis et al. 2005 ; Chen et al. 2008 ; Chen et al. 2011), DeFranco et al. (2011)이 고안한 회계이익-시장수익률 관계(earning return relationship)로부터 산출되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변수를 활용한다.

실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이 받는 초과 감사보수는 비정상 감사시간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연도 초에 결정되는 비정상 감사보수에 추가 감사 생산 원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특유위험 요인에 따른 추가노력 요인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적정 수준의 감사노력을 기준으로 초과 감사노력을 투하하는 기업 표본에서 초과 감사보수를 지불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비교 가능성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과 감사보수가 경제적 유착관계를 의미하는 경우 추가 감사노력을 통해 재무보고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반된다. 즉, 초과 감사보수를 지불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하한 원인이 해당 기업에 대해 감사원가(노력)를 더 투하하거나 감사보수(시간)모형으로 포착되지 않는 개별 기업의 특유 위험 요인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발생액의 질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감사노력이 소요되는 기업의 발생액의 질이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과감사보수에는 경제적 유대관계 논리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감사원가 및 위험과 관련된 요인들도 함께 내재된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 감사시장에서 감사인-기업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정도의 비정상적인 보수가 형성되어 있는지와 관련하여 초과보수가 내포하는 의미에 대한 재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비정상보수의 재해석과 관련하여 향후 보다 추가적인 다양한 연구접근 및 결과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외부 감사와 관련하여 외국에 비해 더욱 다양한 정보(감사시간, 직급별 단계별 감사시간 등)가 공시되기 시작되고 있다. 다양한 외부 감사 관련 공시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감사보수 결정, 감사노력 결정 요인들 이외에 보다 깊이 있는 보수·시간 결정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비정상 보수와 노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한층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들은 비정상 보수와 노력이 필요한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어떤 인식(market perception)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공한다. 비정상보수나 노력이 필요로 한 기업의 감사품질, 회계정보의 품질이 나쁜 원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해석, 그리고 이를 확증할

수 있는 시장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구 확장도 기대된다.

이하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된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가설의 도출을, 제Ⅲ장에서는 연구모형, 표본의 설계와 선정된 표본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제Ⅴ장은 요약결론과 연구의 한계점을 기술한다.

##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의 설정

### 1. 초과감사보수에 대한 연구

#### 가. 경제적 유착관점

감사품질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보고함으로써 높아진다(DeAngelo 1981). 기존의 전통적 견해에서 감사보수는 감사인과 기업 간의 경제적 지대를 형성함에 중요한 변수이며, 감사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미래 경제적 지대에 대한 기대로 인해 초기 감사보수의 할인 현상들이 존재한다. 이렇듯 감사보수는 감사품을 논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임과 동시에 보수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 예를 들어 감사원가, 감사위험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변수라는 특징이 있다.

Kinney and Libby(2002, p.109)는 비정상 감사보수 특히 감사인이 적정 수준 이상의 보수는 기업이 보다 우호적인 감사를 받기 위한 뇌물(attempted bribes)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감사인이 받는 실제 감사보수보다는 적정 보수를 가늠하고 적정 보수에서 벗어나는 초과보수를 측정하는 경우 감사인-기업 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보다 잘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Higgs and Skantz(2006)의 견해도 이를 공유한다. 즉, 정상 수준을 초과하는 감사보수는 감사인-기업 간의 유대적 관계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실제 감사보수를 이용한 연구들은 감사보수와 감사품질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혼재된 결과들을 보고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Frankel et al.(2002)는 감사보수와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 수치간의 음(-)의 관련성을 보고한 반면, Ashbaugh et al.(2003)의 연구는 두 변수간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Defond et al.(2002)의 연구는 초과 감사보수에 대한 초기 연구증거를 제공한다. 그들은 감사인이 제공 받는 경제적 유인(지대)을 초과감사보수, 초과비감사보수 및 초과 총보수의 개념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측정한 바 있다. 실증결과, 이와 같은 경제적 유인과 감사인의 독립성(계속기업관련 의견)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들은 감사인이 받는 경제적 지대가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논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감사인이 받는 초과수입들은 기업과의 경제적 유인을 형성하는 측정치로서의 의미는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인-기업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 관점에서 비정상 보수를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hoi et al.(2010)은 실제 감사보수가 가지고 있는 혼재된 속성을 감안하고 Kinney and Libby (2002)의 견해를 참고하여 적정 수준에서 벗어나는 초과 감사보수를 경제적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변수로 가정하여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Compustat audit fees file에서 추출한 9,815개 기업-년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감사인이 정상 수준을 초과하는 감사보수를 받는 경우와 하회하는 감사보수를 받는 경우에 따라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상 수준을 초과하는 감사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품질이 낮았던 반면, 하회하는 경우에는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정상 수준을 초과하는 보수와 그로 인해 형성되는 경제적 유대관계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낮은 감사품질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특히 실제 감사보수를 이용한 감사품질 연구들은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를 고려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혼재된 결과가 나타났는데 적정 수준의 감사보수 그리고 초과 감사보수를 측정함으로써 감사품질의 훼손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인의 감사품질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훼손으로 이어진다(Levitt 2000). Hope et al.(2009)은 감사인이 적정 수준 이상의 감사보수를 받는 경우(auditor's excessive remuneration) 독립성이 훼손되었을 것으로 전제한 뒤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 훼손에 따른 자본 비용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증한 바 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Compustat,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BES, CRSP등을 통해 수집한 14개국의 재무정보, 감사자료 및 주가와 이익예측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독립성 훼손이 클 경우 자기자본비용(implied cost of equity capital)이 높았다. 특히 연구대상 14개국 가운데 투자자들의 법적 보호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에서 이와 같은 실증결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Choi et al.(2010)의 결과와 유사하게 초과감사보수 구간에서만 자기자본 비용과의 유의한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비정상 초과감사보수가 경제적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변수로 해석되어지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Srinidhi and Gul(2007)의 연구는 비정상 감사보수와 이익의 질(earnings quality)간의 체계적인 유의성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 또한 Hope and Langli (2010)은 극단적으로 높게 지불되는 초과 감사보수와 계속기업 존속의문 의견(going concern opinion) 제시 성향 간에 뚜렷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견해와 실증연구들을 요약하면, 감사인과 기업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는 초과 감사보수에서만 형성되고 해당 구간에서만 감사품질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상 수준을 하회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이 비대칭적(asymmetric) 관계를 보임에 주목하여 초과감사보수의 속성을 위험 관점에서보다는 유대관점에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sup>.

1) 국내 연구들도 비정상 감사보수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윤성만과 박진하(2013)의

### 나. 감사원가, 감사효율성 및 기업 특유위험 관점

DeFond and Zhang(2013)은 감사보수를 감사 수요자와 공급자 관점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변수로 본다. 감사 수요자 입장에서는 높은 감사보수를 지불하는 원인으로 명성, 회계투명성 확보유인, 자금 조달비용의 절감 등의 필요에 기인한다. 한편 감사를 공급하는 감사인 입장에서 높은 감사보수는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감사보수는 감사품질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품질 관점에서만 해석함에는 중요한 단점도 있다. 이와 같은 예로 DeFond and Zhang(2013)은 감사보수가 기업의 감사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품질로 명확히 해석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은 앞서 제시한 경제적 유대관계 관점의 연구들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보고되고 있다. Hribar et al.(2014)의 연구는 이와 같이 감사보수가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과 결부하여 비정상 초과 감사보수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규제기관에의 시사점 관점에서 기존의 경제적 유대관계 관점과 궤를 달리한다. Hribar et al.(2014)는 비정상 초과감사보수를 감사인에 대한 감사품질 제고 압력요인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재무정보의 질이 낮은 기업에 대해 감사인은 추가적인 감사원가 투입 압력에 직면한다. 이로 인해 감사보수 결정 요인으로 설명되는 적정 수준이상의 보수는 각 개별기업 특유 위험요인에 의해 증가되는 노력의 보상으로 간주한다.

Ball et al.(2012)는 비정상 초과감사보수를 높은 감사품질을 필요로 하는 감사수요자들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해석한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비정상 초과 감사보수를 지불하는 피감사인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공시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비공식적이 감사원가도 이와 같은 비정상 감사보수 형성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감사인의 노력, 감사인 구성, 감사보고서 발행 종류, 피감사인의 사업장 소재지의 수, 개별 기업의 고유 영업위험 요인 등 통상적인 감사보수 결정 모형에 의해 잘 관측되지 않는 특유 위험, 원가요인들도 비정상 보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keefe et al. 1994 ; Bell et al. 2001, 2008 등).

Doogar et al.(2015)의 연구는 비정상 초과감사보수의 형성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사례이다. 그들은 비정상 감사보수를 구성하는 요인을 크게 4가지로 보았는데, 감사보수 모형으로는 관측되지 않는 감사원가 요인(common costs), 기업 특유의 원가요인(idiosyncratic costs), 감사인-기

---

연구에서는 경제적 유대관계 관점에서 초과 감사보수와 회사채 스프레드 간의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고한 바 있다. 마희영외(2012)의 연구에서는 초과감사시간과 감리지적 가능성과의 관련성은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초과 감사시간을 감리지적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박종일과 최관(2009)의 연구에서도 초과 감사보수와 재무적 발생액간의 관련성에서는 오히려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초과 감사시간에서만 의미있는 결과를 보고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비정상 감사보수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초과 감사보수에 관한 일관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외의 국내 연구사례(박종일과 박찬웅 2007 ; 김명인 외 2013 ; 전규안과 박종일 2016)에 대한 기술은 지면 관계상 각주로 간략히 제시한다.

업간 형성된 통상적인 지대(common rent), 기업 특유의 경제적 지대요인(idiosyncratic rents)을 구성된다고 가정한 후 계속감사인과 초도감사인 사이에 비정상 감사보수의 지속성 정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9,440개의 US 상장 기업의 감사보수와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전 년도에 비정상 초과감사보수를 지불한 기업은 차기 연도에도 여전히 높은 감사보수를 지속적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감사인이 변경되더라도 이러한 관계는 유지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경제적 유대 요인이외에도 기업에 대한 별도의 감사원가요인(audit production cost)이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대형 감사법인의 비정상 감사보수는 경제적 유대요인과 관련된 지대보다 감사관련 원가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면, 감사보수 결정 모형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비정상 감사보수에는 경제적 지대 뿐 아니라 감사노력을 필요로 하는 원가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감사시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소요되는 기업에 대한 비정상 초과 감사보수 속성을 실증 분석할 수 있다. 만일 감사인이 정상 수준 이상의 감사노력을 투하하는 경우, 감사보수에 경제적 지대 외에 추가 원가를 필요로 하는 개별 기업 요인, 위험 요소들이 있다면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는 이와 같은 추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회계정보의 위험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2. 연구가설의 설정

Hribar et al.(2014)와 Doogar et al.(2015)의 해석처럼 비정상보수가 감사보수 결정 요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사원가, 위험요인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피감사 기업에 대해 감사인은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하할 것이다. 이 경우 감사인의 초과 감사노력 투하여부를 중심으로 감사인의 비정상 보수의 성격에 따라 추가노력 여부에 따른 재무보고의 질과의 관련성은 상이한 방향성을 보일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유대관계 관점에서 비정상 감사보수를 해석(Frankel et al. 2002 ; Hope et al. 2009 ; Choi et al. 2010 등)한다면 감사인의 노력과의 체계적인 관련성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적 유대관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큰 경제적 지대(rent)일 뿐 감사노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유의 감사원가 내지는 위험으로 해석(Hribar et al. 2014 ; Doogar et al. 2015)하면 비정상보수와 비정상 노력 간에는 양(+)의상관성을 보일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대립가설 형태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1 : 경제적 지대관점]

비정상 초과감사보수와 감사인의 추가적인 감사노력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

[연구가설 1-2 : 특유 원가, 위험 관점]

비정상 초과감사보수와 추가적인 감사노력 간에는 양(+)의 관련성이 있다.

다음으로 감사인이 초과 감사노력을 투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비정상초과보수가 재무정보의 질(비교가능성과 발생액의 질)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본다.

첫째, 만일 비정상보수를 감사인-기업 간의 경제적 유착관계(rent)를 의미하는 변수로 해석한다면 초과 감사보수를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함으로 인해 피감사기업의 재무정보의 질은 좋아질 수 있다. 경제적 지대와 무관하게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비정상 초과감사보수가 기업 특유의 감사원가·위험을 의미하여 회계정보의 품질을 대용하는 성격으로 해석되면(Hribar et al. 2014) 감사인이 추가적인 노력을 투하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추가적인 감사원가, 위험에 상응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하는 경우 비정상초과감사보수가 높을수록 재무보고의 질은 낮을(분석에서는 음(-)의 관련성)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비정상보수가 감사인의 추가노력을 필요로 하는 감사원가, 위험요인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재무보고의 질과의 관련성을 통해 비정상초과 감사보수의 속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2-1 : 경제적 지대관점]

초과감사보수를 받는 감사인이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면 재무정보의 질(비교가능성, 발생액의 질)은 높다.

[연구가설 2-2 : 특유 원가, 위험 관점]

초과감사보수를 받는 감사인이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면 재무정보의 질(비교가능성, 발생액의 질)은 낮다.

### Ⅲ. 연구모형의 설정, 표본의 구성 및 기술통계

#### 1. 연구모형

##### 가.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비정상감사보수가 감사인이 투하하는 추가 노력여부에 따라 재무보고의 질적 특성(비교가능성, 발생액의 질)에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감사인이 초과 보수를 받는 경우에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하하는지를 살펴본다.

[실증모형 (1) : 초과 감사보수와 감사인의 추가노력간의 관계]<sup>2)</sup>

$$\begin{aligned} abnh_{i,t} = & \phi_1 + \phi_2 abnf_{i,t} + \phi_3 posabnf_{i,t} + \phi_4 abnf * posabnf_{i,t} + \phi_5 lta_{i,t} + \phi_6 lev_{i,t} + \phi_7 negearn_{i,t} \\ & + \phi_8 mtb_{i,t} + marketfixed + yearfixed + industryfixed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1)$$

여기서,  $i$ 는 기업,  $t$ 는 연도( $t-1$ 은 직전연도)를 의미한다.  $abnh$ 는 감사시간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비정상 감사시간,  $abnf$ 는 감사보수모형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비정상감사보수,  $posabnf$ 는 감사인이 초과감사보수를 받는 경우 '1'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lta$ 는 자산가액의 자연로그,  $lev$ 는 자연로그로 변환된 부채비율,  $negearn$ 는 과거 10년간의 세후순이익 중 5년 이상의 세후 순이익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의 손실 보고 횟수,  $mtb$ 는 자산 장부가액 대비 보통주 시가총액,  $marketfixed$ ,  $yearfixed$ ,  $industryfixed$ 는 각각 시장별(거래소, 코스닥), 연도별, 산업별 고정효과를 의미한다.

식(1)에서 감사인이 받는 초과감사보수가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면  $\phi_4$ 의 계수값은 유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보수나 시간 모형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개별 기업의 특유 감사위험 요인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면 감사인은 초과 보수( $posabnf$ )에 대해 추가 노력( $abnh$ )을 투하할 것이므로  $\phi_4$ 의 계수 값은 유의한 양(+)의 방향성을 보일 것이다. 감사보수 및 시간 모형에서 충분히 통제된 잔차 변수를 이용하므로 자산( $lta$ ), 부채( $lev$ ) 및 손실보고 회수( $negearn$ )와 순자산대비 시가총액( $mtb$ ) 비율을 통제하였다.

두 번째 실증모형은 앞선 첫 번째 실증 모형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실증모형 (2)는 감사인이 받는 초과감사보수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되, 감사인이 추가적인 노력을 투하하는 표본과 그렇지 않은 표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실증모형 (2) : 초과 감사보수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begin{aligned} acomp1(acomp2)_{i,t} = & \gamma_1 + \gamma_2 abnf_{i,t} + \gamma_3 posabnf_{i,t} + \gamma_4 (abnf * posabnf)_{i,t} + \gamma_5 lta_{i,t} + \gamma_6 lev_{i,t} \\ & + \gamma_7 loss_{i,t} + \gamma_8 \sigma(cfo)_{i,t} + \gamma_9 mtb_{i,t} + \gamma_{10} vol_{i,t} + \gamma_{11} for_{i,t} + \gamma_{12} bign_{i,t} \\ & + marketfixed + yearfixed + industryfixed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2)$$

여기서,  $i$ 는 기업,  $t$ 는 연도( $t-1$ 은 직전연도)를 의미한다.  $acomp1(acomp2)$ 는 각각 DeFranco et al.(2011) 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무제표 비교가능정도,  $abnh$ 는 감사시간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비정상 감사시간,  $abnf$ 는 감사보수모형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비정상감사보수,  $posabnf$ 는 감사인이 초과감사보수를 받는 경우 '1'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lta$ 는 자산가액의 자연로그,  $lev$ 는 자연로그로 변환된 부채비율,  $loss$ 는 직전과 당기손익이 연속으로 음(-)인 경우 1인 더미변수,  $\sigma(cfo)$  과거 10년간 영업현금 흐름 중 5개 이상의 영업현금흐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의 평균자산으로 표준화된 영업현금흐름의 표준편차,  $mtb$ 는 자산 장부가액 대비 보통주 시가총액,  $vol$ 은 개별기업의 배당효과를 고려한 월별 수익률의 12개월(4월~익년 3월) 표준편차,  $for$ 는 백분율로 표시된 외국인지분율,  $bign$ 은 대형회계법인수입한 경우 1인 더미변수이다.

- 2) 아래의 식(4)와 식(5)에서는 각각 비정상 감사보수와 비정상 감사노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사 관련 요인들을 충분히 통제하였다(설명력 85~88%). 지면관계상 비정상감사보수(시간) 산출과 관련된 회귀결과는 보고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된 비정상 감사보수(시간)은 재무정보로 포착되지 않는 경제적 유대관계나 각 개별 기업의 특유위험일 것이므로 자산( $lta$ )과 부채( $lev$ ) 및 수익성( $negearn$ )과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정도( $mtb$ )만 회귀모형에 반영하였다.

위 식(2)에서 감사인이 받는 초과감사보수가 경제적 유대관계를 의미한다면,  $\gamma_4$ 의 값은 비교가능성(accomp1, accomp2)에 대해 유의한 음(-)의 방향성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유대관계로 형성된 초과감사보수(posabnf=1)라도 감사인이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상응하는 추가 노력(posabnh=1)을 기울인다면, 이와 같은 음(-)의 관계는 추가적인 감사시간(posabnh=1)을 투하하는 구간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초과감사보수(posabnf=1)가 경제적 유대 관계 이외에 개별 기업의 특유 위험에 의해 형성된 속성을 보인다면 추가노력(posabnh=1)을 투하한 원인은 개별 기업의 특유 위험에 기인한다. 따라서 초과감사보수(posabnf=1)에 대한 비교가능성(accomp1, accomp2)의 회귀계수( $\gamma_4$ )는 여전히 음(-)의 방향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 변수는 선행연구를 참조(오광욱 2015)를 참고하여 기업규모(lta), 부채비율(lev), 성장성(mtb), 수익률의 변동성(vol)을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실증모형 (3)은 Dechow and Dichev(2002) 및 Francis et al.(2005)에서 사용된 발생액의 질(aq)을 이용하여 초과감사보수와 관련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한다. 연구 모형에 추가된 통제 변수는 Francis et al.(2005)에서 발생액의 원천과 관련된 본질적 위험 요인(매출액, 영업현금 변동성, 연업수환주기 및 손실보고 회수 등)과 감사인 유형(bign)을 통제하였다.

[실증모형 (3) : 초과 감사보수와 발생액의 질]

$$\begin{aligned} aq_{i,t} = & \omega_1 + \omega_2 abnf_{i,t} + \omega_3 posabnf_{i,t} + \omega_4 (abnf * posabnf)_{i,t} + \omega_5 lta_{i,t} + \omega_6 lev_{i,t} + \omega_7 \sigma(sales)_{i,t} \\ & + \omega_8 \sigma(cfo)_{i,t} + \omega_9 \sigma(locy)_{i,t} + \omega_{10} neearn_{i,t} + \omega_{10} mtb_{i,t} + \omega_{11} bign_{i,t} \\ & + marketfixed + yearfixed + industryfixed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3)$$

여기서,  $i$ 는 기업,  $t$ 는 연도( $t-1$ 은 직전연도)를 의미한다.  $aq$ 는 Dechow and Dichev(2002)의 방식에 따라 계산된 재무제표발생액의 질,  $\sigma(sales)$ 는 과거 10년간 매출액 중 5개 이상의 매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의 평균자산으로 표준화된 매출액의 표준편차,  $locy$ 는 영업순환주기의 자연대수이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실증모형 (1)~(3)에서 사용하는 주요 관심변수(비정상 감사보수와 비정상 감사시간, 재무제표비교가능성 및 발생액의 질)들에 대한 산출방법을 기술한다.

#### 나. 비정상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측정

비정상감사보수 모형은 여러 연구들(Frankel et al. 2002 ; Higgs and Skantz 2006 ; Hope et al. 2009 ; Choi et al. 2010 ; Hribar et al. 2014 ; Doogar et al. 2015)에서 이용한 변수들과 우리나라에서의 입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에 따라 실제 감사보수와 적정 감사보수의 차이로 계산한다. 단, Caramanis and Lennox(2008)는, 감사인의 감사변수는 이전기간의 감사관련 자료와 높은 지속성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적정 보수와 노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변수는 이러한 지속성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전기 감사보수(laf)를 추가로 통제한다.

[비정상감사보수 측정]

$$\begin{aligned}
abnf = & afee - E(\alpha_1 + \alpha_2 lta_{i,t-1} + \alpha_3 gw_{i,t} + \alpha_4 lev_{i,t-1} + \alpha_5 cacl_{i,t-1} + \alpha_6 recinv_{i,t-1} + \alpha_7 loss_{i,t} \\
& + \alpha_8 emp_{i,t-1} + \alpha_9 con_{i,t-1} + \alpha_{10} bign_{i,t} + \alpha_{11} chaud_{i,t} + \alpha_{12} upaud_{i,t} + \alpha_{13} lnas_{i,t-1} \\
& + \alpha_{14} nnas_{i,t-1} + \alpha_{15} for_{i,t-1} + \alpha_{16} blk_{i,t-1} + \alpha_{17} opi_{i,t-1} + \alpha_{18} laf_{i,t-1} + \alpha_{19} mifrs_{i,t} \\
& + \alpha_{20} vifrs_{i,t} + marketfixed + yearfixed + industryfixed)
\end{aligned} \quad (4)$$

여기서,  $i$ 는 기업,  $t$ 는 연도( $t-1$ 은 직전연도)를 의미한다,  $abnf$ 는 실제 감사보수와 감사보수 결정 요인에 한 적정 감사보수와의 차이,  $afee$ 는 자연로그로 변환된 실제 감사보수,  $lta$ 는 자산가액의 자연로그,  $gw$ 는 자산성장률,  $lev$ 는 자연로그로 변환된 부채비율,  $cacl$ 은 자연로그로 변환된 유동비율,  $recinv$ 는 자산으로 표준화된 재고자산 매출채권비중,  $loss$ 는 직전과 당기손익이 연속으로 음(-)인 경우 1인 더미변수,  $emp$ 는 종업원 수의 제곱근,  $con$ 는 연결자회사 수의 제곱근,  $bign$ 은 대형회계법인수 임한 경우 1인 더미변수,  $chaud$ 는 감사인이 변경된 경우 1인 더미변수,  $upaud$ 는 당기에 대형회계법인으로 상향 변경된 경우 1인 더미변수,  $lnas$ 는 전기 비감사보수의 자연대수,  $nnas$ 는 비감사서비스 제공회사의 제곱근,  $for$ 는 백분율로 표시된 외국인지분율,  $blk$ 는 백분율로 표시된 대주주지분율,  $laf$ 는 전기 감사보수의 자연대수,  $mifrs$ 는 국제회계기준 의무도입시기 이후인 경우 1인 더미변수,  $vifrs$ 는 국제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한 경우 1인 더미변수,  $marketfixed$ ,  $yearfixed$ ,  $industryfixed$ 는 각각 시장(거래소, 코스닥) 연도 및 산업고정효과를 위한 더미변수이다.

위 모형 (4)의  $abnf$ 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적정 수준을 넘는 초과 감사보수를 받는 것으로 보아 1의 값( $posabnf=1$ )을 부여한다.

비정상감사시간 모형도 감사보수 결정 변수와 유사한 방식으로 측정한다. 다만, 감사노력은 해당연도의 감사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비재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감사보수 모형과 달리, 당기 변수에 기반하여 추정한다. 또한 직전년도 감사보수 수준에 따라 당해 기업에 대한 감사노력 수준을 고려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전기 감사시간( $lah$ )을 추가적으로 통제한다.

[비정상감사감사노력의 측정]

$$\begin{aligned}
abnh = & ahour - E[\beta_1 + \beta_2 lta_{i,t} + \beta_3 gw_{i,t} + \beta_4 lev_{i,t} + \beta_5 cacl_{i,t} + \beta_6 recinv_{i,t} + \beta_7 loss_{i,t} + \beta_8 emp_{i,t} \\
& + \beta_9 con_{i,t} + \beta_{10} bign_{i,t} + \beta_{11} chaud_{i,t} + \beta_{12} upaud_{i,t} + \beta_{13} lnas_{i,t} + \beta_{14} nnas_{i,t} \\
& + \beta_{15} for_{i,t} + \beta_{16} blk_{i,t} + \beta_{17} opi_{i,t} + \beta_{18} lah_{i,t-1} + \beta_{19} mifrs_{i,t} + \beta_{20} vifrs_{i,t} \\
& + marketfixed + yearfixed + industryfixed]
\end{aligned} \quad (5)$$

여기서,  $i$ 는 기업,  $t$ 는 연도( $t-1$ 은 직전연도)를 의미한다,  $abnh$ 는 실제 감사시간과 감사시간 결정 요인에 한 적정 감사시간과 차이,  $ahour$ 는 자연로그로 변환된 실제 감사시간이다.

위의 식으로부터 도출된 잔차 값을 기준으로 모형 (5)의  $abnh$ 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적정 수준을 넘는 추가 감사노력을 투하하는 것으로 보아 1의 값( $posabnh=1$ )을 부여한다.

#### 다.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측정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은 기업별로 수립되어 있는 회계정보 산출 시스템이 기업의 추가수익률에 반영되는 유사도(earning-return equation)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E(\text{Earnings})_{it} = \hat{\nu}_i + \hat{\nu}_i^* \text{Return}_{it}$$

$$E(\text{Earnings})_{jt} = \hat{\nu}_j + \hat{\nu}_j^* \text{Return}_{jt}$$

위의 모형에 의해 추정되는 특정기업 자신(i)의 시장 수익률에 의해 예측되는 회계이익 예측치(predicted earnings)와 자신(i) 시장수익률에 의해 설명되는 대응기업(j)의 회계이익예측치와의 차이를 4개연도 16개 분기의 회귀자료를 이용하여 각각 계산한 다음 그 절대치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1을 곱하는 것은 두 예측 이익치 간의 거리가 커질수록 비교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기 위함이며 16으로 나눈 것은 4개연도 16개분기의 거리합계의 평균값을 산출하기 위함이다.

[재무보고 비교가능성]

$$\text{Comparability}_{ijt} = (-1/16) \times \sum_{t=15}^t |E(\text{earnings}_{it}) - E(\text{earnings}_{jt})| \quad (6)$$

여기서, 아래첨자 i, j는 개별 기업을, t는 표본이 속한 분기를 의미한다. Comparability는 기업 수준의 재무제표 대응 정도이다. E(earnings)는 16분기 이익-수익률 회귀모형을 통해 산출된 i기업과 j기업의 회귀 예측치(predictive estimates)이다.

위와 같은 개념에 의거하여 측정되는 Comparability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 두 개의 비교가능성 수치를 분석에 이용한다. 먼저, acomp1은 각 기업을 중심으로 동일 산업 내 다른 기업과 대응하여 산출된 비교가능성 수치의 평균값이다. 둘째, 평균값은 극단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수(parameter)이므로 동일 산업 내 다른 기업들과 대응하여 계산한 비교가능성 수치의 중위 값인 acomp2를 분석에 이용한다.

#### 라. 발생액의 질 측정

다음으로 발생액의 질(accruals quality)는 Dechow and Dichev(2002)와 Francis et al.(2005)에서 제안한 발생액의 질(accruals quality)을 이용한다. 구체적으로 발생액의 질은 유동발생액 가운데 전기 현금흐름에 의한 당기 발생액, 당기 현금흐름에 의한 당기 발생액 및 차기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당기 발생액에 의해서도 반영되지 않는 발생액과 비재량적 재무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잔차를 의미한다.

[발생액의 질]

$$TCA_{i,t} = \delta_1 + \delta_2 CFO_{i,t-1} + \delta_3 CFO_{i,t} + \delta_4 CFO_{i,t+1} + \delta_5 \Delta REV_{i,t} + \delta_6 PPE_{i,t} + \zeta_{i,t} \quad (7)$$

여기서, 아래첨자  $i$ 는 개별 기업을,  $t$ 는 표본이 속한 연도를 의미한다. TCA는 (유동자산의 변화-유동부채의 변화-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변화+유동성장기부채의 변화)로 측정되는 영업활동 관련 유동발생액, CFO는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Delta REV$ 는 (매출액변화-매출채권 변화), PPE는 감가성 유형자산의 총계이다. 모든 변수들은 기업성장(비정상적 자산증가)로 인한 과도한 표준화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전년도와 당년도 자산의 평균치로 표준화하였다(Chen et al. 2008).

위 모형을 이용하여 도출되는 잔차( $\zeta_{i,t}$ )의 5개년간의 표준편차로 변동성을 측정하여 개별 기업의 발생액의 질로 정의하되 -1값을 곱하여 해당 값이 큰 값을 가질수록 발생액의 질이 좋은 것으로 해석되도록 한다.

$$Aq_{i,t} = (-1) * Std(\zeta_{i,t}) \quad (7-1)$$

## 2. 표본의 구성

본 연구의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활용한다. 외부 감사와 관련된 사업보고서 공시자료는 2003년부터 상장사 협의회(TS-2000)에서 제공되므로 이를 이용한다. 다음과 같은 주요 자료 선정 기준을 통해 9,468 기업-년 자료를 선정, 실증 분석에 이용하였다.

- ① 12월 결산 거래소·코스닥 상장기업으로 비금융업을 영위할 것
- ② 2003년 이후 외부 감사에 대한 감사보수, 감사시간(시간단위), 비감사보수와 감사인 유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것
- ③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계산하기 위해 배당효과를 고려한 월별 수익률 자료와 분기별 재무정보를 모두 입수 할 수 있을 것
- ④ 외국인 지분율과 대주주 지분율 자료를 모두 공시하고 있을 것
- ⑤ 감사보수 모형의 설명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재무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

본 연구에서는 감사보수 모형을 구현하기 위해 재무자료는 한국 상장사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TS2000 Data를 활용한다. 또한, 배당효과를 고려한 월별 수익률 및 주가 변동성 계산을 위한 자료는 FnGuide를 활용한다. 위에서 제시된 조건에 따라 선정된 연구표본의 연도별, 시장별, 감사인 유형별, 산업별 분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을 살펴보면, 거래소 기업표본은 4,379 기업-년, 코스닥 표본 기업은 5,089 기업-년으로 각각 약 46%와 54%의 비중 구성을 보인다. 전체 표본 가운데 약 54.5%정도가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표본의 구성 수가 연도에 따라 차츰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특정 연도의 표본 추출로 인한 실증 결과의 오염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표 1〉 표본의 분포

| Panel A : 시장별 · 감사인유형별 · 연도별 표본의 분포 (빈도수 %) |         |         |         |         |          |
|---------------------------------------------|---------|---------|---------|---------|----------|
| 연 도                                         | 거래소     | 코스닥     | 대형감사인   | 중소형감사인  | 합 계      |
| 2003                                        | 160     | 98      | 173     | 85      | 258      |
|                                             | (1.69)  | (1.04)  | (1.83)  | (0.90)  | (2.72)   |
| 2004                                        | 335     | 233     | 356     | 212     | 568      |
|                                             | (3.54)  | (2.46)  | (3.76)  | (2.24)  | (6.00)   |
| 2005                                        | 377     | 372     | 420     | 329     | 749      |
|                                             | (3.98)  | (3.93)  | (4.44)  | (3.47)  | (7.91)   |
| 2006                                        | 399     | 430     | 458     | 371     | 829      |
|                                             | (4.21)  | (4.54)  | (4.84)  | (3.92)  | (8.76)   |
| 2007                                        | 412     | 438     | 468     | 382     | 850      |
|                                             | (4.35)  | (4.63)  | (4.94)  | (4.03)  | (8.98)   |
| 2008                                        | 423     | 476     | 487     | 412     | 899      |
|                                             | (4.47)  | (5.03)  | (5.14)  | (4.35)  | (9.50)   |
| 2009                                        | 420     | 525     | 483     | 462     | 945      |
|                                             | (4.44)  | (5.54)  | (5.10)  | (4.88)  | (9.98)   |
| 2010                                        | 442     | 570     | 528     | 484     | 1,012    |
|                                             | (4.67)  | (6.02)  | (5.58)  | (5.11)  | (10.69)  |
| 2011                                        | 455     | 607     | 561     | 501     | 1,062    |
|                                             | (4.81)  | (6.41)  | (5.93)  | (5.29)  | (11.22)  |
| 2012                                        | 471     | 652     | 600     | 523     | 1,123    |
|                                             | (4.97)  | (6.89)  | (6.34)  | (5.52)  | (11.86)  |
| 2013                                        | 485     | 688     | 627     | 546     | 1,173    |
|                                             | (5.12)  | (7.27)  | (6.62)  | (5.77)  | (12.39)  |
| 합 계                                         | 4,379   | 5,089   | 5,161   | 4,307   | 9,468    |
|                                             | (46.25) | (53.75) | (54.51) | (45.49) | (100.00) |

〈표 1〉 표본의 분포 (계속)

| Panel B :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별 표본의 분포 |       |          |
|---------------------------------|-------|----------|
| 산 업 명                           | 표본수   | 백분율(%)   |
| 어 업                             | 41    | (0.44)   |
| 제조업                             | 6,924 | (73.13)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97    | (1.02)   |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4     | (0.04)   |
| 종합 건설업                          | 491   | (5.19)   |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791   | (8.35)   |
| 운송업                             | 139   | (1.47)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585   | (6.18)   |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273   | (2.88)   |
| 사업지원서비스업                        | 37    | (0.39)   |
| 교육서비스업                          | 43    | (0.45)   |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34    | (0.36)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     | (0.10)   |
| 합 계                             | 9,468 | (100.00) |

Panel B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3%정도이며 도매 및 상품중개업 8.3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비중이 6.18%순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산업별 구성을 감안할 때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표본 비중이 높게 선정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3. 기술통계

다음의 <표 2>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제시한다. 발생액의 질(aq)의 경우 산출과정에서 과거 5년간의 발생액의 질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따라서 5년 연속 재무자료와 중분류 동일 산업 내에서 10개 이상 기업이 있는 경우에 산출되는 변수이므로 7,536 기업-년 자료를 토대로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는 <표 1>에서 제시한 9,468 기업-년 자료를 기준으로 기술 통계를 제시한다. 제시된 변수들의 극단치를 통제하기 위해 상·하위 1%에서 윈저화 하였으므로 1분위와 99분위수는 각각 최소, 최대값과 같다.

〈표 2〉 기술통계량

| 변 수              | 표본수   | 최소      | 1분위    | 중위수    | 3분위    | 최대     | 평균     | 표준편차  |
|------------------|-------|---------|--------|--------|--------|--------|--------|-------|
| abnf             | 9,468 | -0.561  | -0.095 | -0.006 | 0.089  | 0.609  | 0.001  | 0.175 |
| abnh             | 9,468 | -0.717  | -0.125 | -0.011 | 0.104  | 1.003  | 0.001  | 0.250 |
| acompl           | 9,468 | -10.410 | -1.560 | -0.780 | -0.400 | -0.130 | -1.410 | 1.777 |
| acompl2          | 9,468 | -20.230 | -5.150 | -3.360 | -2.410 | -1.250 | -4.450 | 3.342 |
| aq               | 7,536 | -0.390  | -0.116 | -0.073 | -0.046 | -0.016 | -0.092 | 0.067 |
| lta              | 9,468 | 16.445  | 17.881 | 18.566 | 19.558 | 23.499 | 18.858 | 1.421 |
| lev              | 9,468 | 0.061   | 0.271  | 0.432  | 0.574  | 0.890  | 0.428  | 0.196 |
| loss             | 9,468 | 0.000   | 0.000  | 0.000  | 0.000  | 1.000  | 0.142  | 0.349 |
| mtb              | 9,468 | -2.706  | -1.231 | -0.704 | -0.168 | 1.303  | -0.698 | 0.805 |
| vol              | 9,468 | 0.037   | 0.094  | 0.130  | 0.182  | 0.496  | 0.152  | 0.098 |
| for              | 9,468 | 0.000   | 0.001  | 0.011  | 0.073  | 0.560  | 0.066  | 0.116 |
| $\sigma$ (sales) | 9,468 | 0.041   | 0.130  | 0.211  | 0.343  | 1.236  | 0.269  | 0.204 |
| $\sigma$ (cfo)   | 9,468 | 0.021   | 0.051  | 0.074  | 0.107  | 0.291  | 0.087  | 0.051 |
| locy             | 9,468 | 3.023   | 4.431  | 4.792  | 5.170  | 6.314  | 4.792  | 0.600 |
| negearn          | 9,468 | 0.000   | 0.000  | 1.000  | 3.000  | 9.000  | 1.972  | 2.246 |
| bign             | 9,468 | 0.000   | 0.000  | 1.000  | 1.000  | 1.000  | 0.545  | 0.498 |

여기서, abnf는 감사보수 결정모형에 의해 산출된 비정상 감사보수, abnh 감사시간 결정모형에 의해 산출된 비정상 감사시간, acompl(acompl2)은 각각 DeFranco et al.(2011) 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무제표 비교가능성도이다. aq는 Dechow and Dichev(2002)의 방식에 따라 계산된 재무제표발생액의 질, lta는 자산가액의 자연로그, lev는 자연로그로 변환된 부채비율, loss는 직전과 당기손익이 연속으로 음(-)인 경우 1인 더미변수, mtb는 자산 장부가액 대비 보통주 시가총액, vol은 개별기업의 배당효과를 고려한 월별 수익률의 12개월(4월~익년3월) 표준편차, for는 백분율로 표시된 외국인지분율,  $\sigma$ (sales)는 과거 10년간 매출액 중 5개 이상의 매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의 평균자산으로 표준화된 매출액의 표준편차,  $\sigma$ (cfo) 과거 10년간 영업현금 흐름 중 5개 이상의 영업현금흐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의 평균자산으로 표준화된 영업현금흐름의 표준편차, locy는 영업순환주기의 자연대수, negearn는 과거 10년간의 세후순이익 중 5년 이상의 세후 순이익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의 손실 보고횟수, bign은 대형회계법인수입한 경우 1인 더미변수이다

관심변수인 비정상 감사보수(abnf)와 비정상 감사시간(abnh)의 평균(중위수)은 각각 0.001(-0.006), 0.001(-0.011)이다. 최댓값은 각각 0.609와 1.003이며 최솟값은 각각 -0.561, -0.717이다.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acompl, acompl2)는 각각 동일 산업 내에 속한 모든 기업들과 대응하여 산출된 비교가능성 수치의 기업단위(firm level) 평균과 중위수 값이다. 평균은 극단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임을 감안할 때, 평균화된 수치의 표준편차(1.777)이 극단치의 영향이 적은 중위수 값의 표준편차(3.342)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생액의 질(aq)의 평균과 중위수는 각각 -0.092와 -0.073으로 두 모수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양(+)의

값인 표준편차에 (-)1의 값을 곱하였으므로 모든 변수 값은 음(-)의 값을 갖는다.

부채비율(lev)의 최댓값은 0.890으로 100%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재무적 곤경에 있는 기업이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손실보고횟수(negearn)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0회에서 9회까지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1.972회의 손실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표본 가운데 54.5%가 대형회계법인(bign)의 감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대형감사인(bign)의 점유율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표 3>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표 2>에서와 마찬가지로 발생액의 질(aq)은 7,536 기업-년 표본으로, 나머지 변수들은 9,468 기업-년 표본을 기준으로 상관관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3〉 피어슨 상관관계(p-value)

[illegible]

여기서, 변수 간 피어슨 상관관계 산출 시 aq변수는 7,536개 표본을 기준으로, 나머지 변수는 모두 9,468개 표본으로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변수의 정의에 대해서는 <표 2>를 참조한다.

주요 관심변수인 비정상 감사보수(abnf)를 중심으로 우측 횡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먼저 비정상감사시간(abnh)과의 상관관계는 0.28로 1%이상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상 수준에서 벗어나는 감사보수를 지출하는 경우 감사인도 추가적인 노력을 투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비정상 보수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및 발생의 질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비정상 감사보수(abnf)가 크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떨어지고 발생액의 질도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기업 규모(ita)가 클수록 순자산시가총액(mtb)이 클수록 수익률의 변동성(vol)이 클수록 매출액(( $\sigma$ ) sales)과 현금흐름의 변동성(( $\sigma$ ) cfo)이 클수록 손실보고횟수(negearn)가 많을수록 비정상감사보수(abnf)가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비정상 감사시간(abnh)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살펴보면 상호 유사성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가늠하는 분산 팽창계수 값도 4미만이었다.

## IV. 실증분석결과

### 1. 초과감사보수와 감사인의 추가적인 노력

제IV장에서는 본 연구들의 연구가설들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 (1)의 회귀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가설 1]은 초과 감사보수를 받는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표 4>를 살펴보면, 감사인이 초과감사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posabnf=0)에 비정상 감사보수(abnf)의 회귀계수는 0.346( $t=11.35$ )으로 양측검정 1%수준 이상에서 강한 양(+)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초과감사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정상 수준을 미달하는 감사보수가 정상 감사보수 수준으로 가까워질수록 그에 상응하는 감사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초과감사보수를 받는 경우(posabnf=1) 비정상 감사보수와 비정상 감사노력(abnh) 간의 기울기 변화를 살펴보면 ( $abnf+abnf*posabnf$ ) 0.501( $=0.346+0.155$ )로 초과감사보수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posabnf=0)에 비해 0.155( $t=3.74$ )만큼 더 강한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과 감사보수를 받는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초과감사보수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posabnf=0)의 기울기인 0.346에 비해 초과감사보수가 형성된 구간(posabnf=1)에서 증분적(incremental) 기

울기 변화는 0.155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과감사보수를 받는 감사인의 경우 기업 특유의 감사원가나 위험에 대해 감사인이 이를 감사노력에 더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경제적 지대(rent)에 상응하는 효과가 일부 존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유 감사원가, 위험 요인에 의한 효과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면 [연구가설 1-2]의 예상이 지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초과감사보수를 받는 감사인의 추가 감사노력

[연구모형]

$$\text{abnh}_{i,t} = \psi_1 + \psi_2 \text{abnf}_{i,t} + \psi_3 \text{posabnf}_{i,t} + \psi_4 \text{abnf} * \text{posabnf}_{i,t} + \psi_5 \text{lta}_{i,t} + \psi_6 \text{lev}_{i,t} + \psi_7 \text{negearn}_{i,t} \\ + \psi_8 \text{mtb}_{i,t} + \text{marketfixed} + \text{yearfixed} + \text{industryfixed} + \varepsilon_{i,t} \quad (1)$$

| 변수명        | 예상부호     | 계수값    | t-값      |
|------------|----------|--------|----------|
| 절편         | N/A      | 0.031  | 0.32     |
| abnf (1)   | +/-      | 0.346  | 11.35*** |
| posabnf(2) | +/-      | -0.012 | -1.74*   |
| (1)*(2)    | +/-      | 0.155  | 3.74***  |
| lta        | +        | -0.002 | -0.64    |
| lev        | +        | 0.000  | 0.03     |
| negearn    | +        | 0.000  | 0.20     |
| mtb        | +/-      | -0.001 | -0.31    |
| 시장통제       | 통제       |        |          |
| 연도통제       | 통제       |        |          |
| 산업통제       | 통제       |        |          |
| 표본수(N)     | 9,468    |        |          |
| F-value    | 28.09*** |        |          |
| 수정설명력(%)   | 7.91     |        |          |

여기서, \*\*\*, \*\*, \*은 각각 양측검정 기준으로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변수들의 정의에 대해서는 <표 2>를 참조한다.

## 2. 감사인의 추가 감사노력 여부에 따른 초과감사보수의 속성

### 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이하에서는 감사인이 초과감사보수를 받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하는 경우 재

무보고의 질적 특성(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발생액의 질)과 어떤 체계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한다.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 (2)와 (3)에 대한 다변량 회귀 분석결과 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추가적인 감사노력 투하여부에 따른 초과감사보수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연구모형]

$$\begin{aligned} \text{acompl}(\text{acompl}2)_{i,t} = & \gamma_1 + \gamma_2 \text{abnf}_{i,t} + \gamma_3 \text{posabnf}_{i,t} + \gamma_4 (\text{abnf} * \text{posabnf})_{i,t} + \gamma_5 \text{lta}_{i,t} + \gamma_6 \text{lev}_{i,t} \\ & + \gamma_7 \text{loss}_{i,t} + \gamma_8 \sigma(\text{cfo})_{i,t} + \gamma_9 \text{mtb}_{i,t} + \gamma_{10} \text{vol}_{i,t} + \gamma_{11} \text{for}_{i,t} + \gamma_{12} \text{bign}_{i,t} \\ & + \text{marketfixed} + \text{yearfixed} + \text{industryfixed} + \varepsilon_{i,t} \end{aligned}$$

Panel A : 동일 산업 내 평균값으로 비교가능성을 측정한 경우(acompl1)

| 변수명                  | 전체표본      |        |           | abnh=0<br>(추가노력 미투입) |           | abnh=1<br>(추가노력 투입) |           |
|----------------------|-----------|--------|-----------|----------------------|-----------|---------------------|-----------|
|                      | 예상<br>부호  | 계수값    | t-값       | 계수값                  | t-값       | 계수값                 | t-값       |
| 절편                   | N/A       | -4.244 | -3.91***  | -4.365               | -3.32***  | -3.834              | -1.82*    |
| abnf(1)              | +/-       | 0.998  | 2.92***   | 0.885                | 2.16**    | 1.455               | 2.30**    |
| posabnf(2)           | +/-       | 0.036  | 0.45      | 0.075                | 0.67      | -0.029              | -0.24     |
| (1)*(2)              | +/-       | -2.831 | -6.09***  | -2.678               | -3.88***  | -3.181              | -4.28***  |
| lta                  | +         | 0.148  | 4.97***   | 0.157                | 3.83***   | 0.131               | 3.00***   |
| lev                  | +/-       | -1.953 | -11.56*** | -1.649               | -7.17***  | -2.319              | -9.29***  |
| loss                 | -         | -2.388 | -27.99*** | -2.255               | -19.60*** | -2.560              | -20.06*** |
| $\sigma(\text{cfo})$ | -         | -6.255 | -10.38*** | -6.140               | -7.37***  | -6.404              | -7.31***  |
| mtb                  | +/-       | 0.383  | 8.68***   | 0.403                | 6.59***   | 0.356               | 5.57***   |
| vol                  | -         | -4.287 | -13.72*** | -3.919               | -9.47***  | -4.800              | -10.06*** |
| for                  | +         | 0.549  | 1.88*     | 0.413                | 1.06      | 0.661               | 1.49      |
| bign                 | +         | 0.011  | 0.18      | -0.085               | -1.02     | 0.140               | 1.53      |
| 시장통제                 | 통제        |        |           | 통제                   |           | 통제                  |           |
| 연도통제                 | 통제        |        |           | 통제                   |           | 통제                  |           |
| 산업통제                 | 통제        |        |           | 통제                   |           | 통제                  |           |
| 표본수(N)               | 9,468     |        |           | 5,006                |           | 4,462               |           |
| F-value              | 137.87*** |        |           | 72.04***             |           | 67.54***            |           |
| 수정설명력(%)             | 32.96     |        |           | 32.55                |           | 33.65               |           |

〈표 5〉 추가적인 감사노력 투하여부에 따른 초과감사보수와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계속)

| Panel B : 동일 산업내 중위수 값으로 비교가능성을 측정한 경우(acomp2) |           |        |           |                      |           |                     |           |
|------------------------------------------------|-----------|--------|-----------|----------------------|-----------|---------------------|-----------|
| 변수명                                            | 전체 표본     |        |           | abnh=0<br>(추가노력 미투입) |           | abnh=1<br>(추가노력 투입) |           |
|                                                | 예상<br>부호  | 계수값    | t-값       | 계수값                  | t-값       | 계수값                 | t-값       |
| 절편                                             | N/A       | -5.027 | -4.58***  | -4.878               | -3.65***  | -5.078              | -2.40**   |
| abnf(1)                                        | +/-       | 1.212  | 3.50***   | 1.167                | 2.80***   | 1.571               | 2.48**    |
| posabnf(2)                                     | +/-       | 0.067  | 0.82      | 0.068                | 0.60      | 0.055               | 0.46      |
| (1)*(2)                                        | +/-       | -3.275 | -6.97***  | -3.197               | -4.55***  | -3.547              | -4.75***  |
| lta                                            | +         | 0.246  | 8.16***   | 0.249                | 5.97***   | 0.232               | 5.29***   |
| lev                                            | +/-       | -2.740 | -16.04*** | -2.353               | -10.07*** | -3.200              | -12.76*** |
| loss                                           | -         | -3.114 | -36.08*** | -3.016               | -25.77*** | -3.248              | -25.33*** |
| $\sigma$ (cfo)                                 | -         | -5.624 | -9.23***  | -5.732               | -6.76***  | -5.565              | -6.32***  |
| mtb                                            | +/-       | 0.299  | 6.69***   | 0.336                | 5.41***   | 0.251               | 3.91***   |
| vol                                            | -         | -4.866 | -15.39*** | -4.545               | -10.80*** | -5.329              | -11.12*** |
| for                                            | +         | 0.657  | 2.22**    | 0.506                | 1.27      | 0.801               | 1.79*     |
| bgn                                            | +         | 0.005  | 0.09      | -0.116               | -1.36     | 0.164               | 1.78*     |
| 시장통제                                           | 통제        |        |           | 통제                   |           | 통제                  |           |
| 연도통제                                           | 통제        |        |           | 통제                   |           | 통제                  |           |
| 산업통제                                           | 통제        |        |           | 통제                   |           | 통제                  |           |
| 표본수(N)                                         | 9,468     |        |           | 5,006                |           | 4,462               |           |
| F-value                                        | 146.87*** |        |           | 74.97***             |           | 73.96***            |           |
| 수정설명력(%)                                       | 34.38     |        |           | 33.44                |           | 35.74               |           |

여기서, \*\*\*, \*\*, \*은 각각 양측검정 기준으로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변수들의 정의에 대해서는 <표 2>를 참조한다.

동일 산업 내 기업들 간의 비교가능성 수치들의 평균값(acomp1)을 각 표본 기업들의 재무제표비교가능성으로 측정한 경우와 중위수 값(acomp2)으로 측정한 경우 회귀결과의 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Panel A의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기술한다.

먼저 전체표본을 기준으로 감사인이 초과감사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posabnf=0)의 비정상 감사보수(abnf)와 재무제표비교가능성(acomp1)간의 회귀계수는 0.998(t=2.92)로 양측검정 1%이상의 유의적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련성은 감사인이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경에도 일관된다. 다만,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는 표본(posabnh=1 표본)에서의 회귀계수(1.455)가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 경우(0.885)에 비해 기울기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추가보수에 상응하는 추가 노력을 투하하는 경우 비교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체표본에서 감사인이 초과감사보수를 받는 경우(posabnf=1), 비정상감사보수(abnf)에 대한 증분 기울기는  $-1.833(=-2.831+0.998)$  유의한 음(-)의 방향을 보인다.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 표본(posabnh=1 표본)에서의 증분 기울기는  $-1.793(=-2.678+0.885)$ 인 반면, 감사인이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는 표본(posabnh=1)에서의 증분적인 기울기는  $-1.726(=-3.181+1.455)$ 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석하면 감사인이 받는 초과감사보수를 경제적 지대관점이나 특유 감사원가, 위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 일관되게 재무제표의비교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초과감사보수를 받더라도 감사인이 추가 감사노력을 투입한다면 기업특유 요인에 의한 감사원가 내지는 위험에 따른 노력 투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연구가설 2-2]의 예상과 같이 여전히 재무제표비교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초과감사보수내에는 감사인이 받는 경제적 지대요인 뿐 아니라 감사보수나 시간 모형을 통해 통제되지 않는 기업특유의 감사원가나 위험 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며(Higgs and Skantz 2006) 이러한 경우 초과감사보수는 오히려 회계정보의 질이 낮은 기업에게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Hribar et al. 2014)<sup>3)</sup>.

#### 나. 발생액의 질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번째 재무보고의 질을 대용하는 변수인 발생액의 질(Francis et al. 2005)을 이용한 경우의 결과를 <표 6>에 제시한다. 단, 앞서 연구모형에서 언급하였듯이 계산된 발생액의 질에 (-)1을 곱하였으므로 해당 수치가 커지면 발생액의 질(aq)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표 6>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표본에서 감사인이 초과감사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posabnf=0) 비정상 감사보수(abnf)와 발생액의 질(aq) 사이에는  $0.020(t=2.60)$ 으로 1% 수준의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 수준의 감사보수를 받는 방향으로 비정상감사보수(abnf)가 증가하는 경우 발생액의 질(aq)은 좋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통제변수에 대한 예상은 기존의 선행연구(오광욱 2015)와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각 통제변수에 대한 예상방향성과 결과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표 6〉 추가적인 감사노력 투하여부에 따른 초과감사보수와 발생액의 질

[연구모형]

$$\begin{aligned}
 aq_{i,t} = & \omega_1 + \omega_2 abnf_{i,t} + \omega_3 posabnf_{i,t} + \omega_4 (abnf * posabnf)_{i,t} + \omega_5 lta_{i,t} + \omega_6 lev_{i,t} + \omega_7 \sigma(sales)_{i,t} \\
 & + \omega_8 \sigma(cfo)_{i,t} + \omega_9 \sigma(locy)_{i,t} + \omega_{10} negearn_{i,t} + \omega_{11} mtb_{i,t} + \omega_{12} bign_{i,t} \\
 & + marketfixed + yearfixed + industryfixed + \varepsilon_{i,t}
 \end{aligned}$$

| 변수명             | 전체 표본     |        |           | abnh=0<br>(추가노력 미투입) |           | abnh=1<br>(추가노력 투입) |           |
|-----------------|-----------|--------|-----------|----------------------|-----------|---------------------|-----------|
|                 | 예상<br>부호  | 계수값    | t-값       | 계수값                  | t-값       | 계수값                 | t-값       |
| 절편              | N/A       | -0.076 | -4.44***  | -0.049               | -2.06**   | -0.103              | -4.21***  |
| abnf(1)         | +/-       | 0.020  | 2.60***   | 0.019                | 1.98**    | 0.019               | 1.35      |
| posabnf(2)      | +/-       | 0.002  | 1.21      | 0.002                | 0.81      | 0.003               | 0.95      |
| (1)*(2)         | +/-       | -0.054 | -5.03***  | -0.054               | -3.30***  | -0.053              | -3.08***  |
| lta             | +         | 0.004  | 6.12***   | 0.003                | 3.47***   | 0.005               | 5.11***   |
| lev             | +/-       | 0.019  | 4.66***   | 0.016                | 2.94***   | 0.020               | 3.46***   |
| $\sigma(sales)$ | -         | -0.040 | -10.30*** | -0.048               | -8.84***  | -0.031              | -5.57***  |
| $\sigma(cfo)$   | -         | -0.253 | -15.92*** | -0.271               | -12.02*** | -0.234              | -10.38*** |
| locy            | -         | -0.002 | -2.01**   | -0.005               | -2.82***  | 0.000               | 0.12      |
| negearn         | -         | -0.005 | -16.61*** | -0.006               | -12.02*** | -0.005              | -11.29*** |
| mtb             | +/-       | -0.010 | -9.88***  | -0.011               | -7.80***  | -0.009              | -6.19***  |
| bign            | +         | -0.002 | -1.19     | 0.000                | -0.24     | -0.003              | -1.58     |
| 시장통제            | 통제        |        |           | 통제                   |           | 통제                  |           |
| 연도통제            | 통제        |        |           | 통제                   |           | 통제                  |           |
| 산업통제            | 통제        |        |           | 통제                   |           | 통제                  |           |
| 표본수(N)          | 7,536     |        |           | 3,960                |           | 3,576               |           |
| F-value         | 136.17*** |        |           | 73.76***             |           | 63.78***            |           |
| 수정설명력(%)        | 31.81     |        |           | 32.33                |           | 31.35               |           |

여기서, \*\*\*, \*\*, \*은 각각 양측검정 기준으로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변수들의 정의에 대해서는 <표 2>를 참조한다.

다음으로 초과감사보수를 받는 경우(posabnf=1) 증분적 기울기는 -0.054(t=-5.03, 1%수준 유의)이고 전체 기울기의 합은 -0.034(=-0.054+0.020)로 음(-)의 회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초과감사보수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투하하는 경우 오히려

발생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하지 않는 표본( $posabnh=0$ )과 투입하는 표본( $posabnh=1$ )에서의 결과를 확인한다. 먼저, 감사인이 초과감사보수( $posabnf=1$ )를 받더라도 추가노력을 투입하지 않는 경우( $posabnh=0$  표본)에는 초과감사보수가 경제적 지대관점(rent)에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결과를 살펴보면 증분 기울기를 포함한 전체 기울기는  $-0.035(=-0.054+0.019)$ 로 비정상 초과감사보수를 받는(지불하는) 감사인(회사)에 대한 발생액의 질(aq)은 나쁨을 알 수 있다. 반면, 감사인이 초과감사보수를 받으며( $posabnf=1$ ) 추가노력을 투입하는 경우( $posabnh=1$  표본)는 경제적 지대보다는 기업 특유의 감사원가 내지는 위험에 따른 노력이 소요된 기업일 개연성이 크다. 만일 해당 기업이 지불하는 초과감사보수( $posabnf=1$ )에 경제적 지대 요인이 더 크다면 추가 감사노력( $posabnh=1$  표본)으로 발생액의 질(aq)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실증 결과를 살펴보면 증분 기울기는  $-0.053(t=-3.08, 1\%수준 유의)$  증분 효과를 포함한 기울기는  $-0.034(=-0.053+0.019)$ 로 여전히 발생액의 질(aq)과 음(-)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표 5>의 결과와 일관되며 기업 특유의 감사원가, 위험 관점에서 해석할 경우에 예상되는 [연구가설 2-2]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4)</sup>.

이상의 실증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이 초과감사보수를 받는 경우 경제적 지대관점에서 해석하면 추가 감사노력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추가적인 노력이 투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과감사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기업 특유의 감사원가 내지는 위험 요인이 있고 이에 대해 감사인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초과감사보수에는 Doogar et al.(2015)이나 Higgs and Skantz(2006)의 견해와 동일하게 지대요인과 개별 기업의 감사관련 특유요인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재무보고의 질(비교가능성, 발생액의 질)과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서도 여전히 초과감사보수를 지불하는 기업의 재무보고의 질이 나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적인 노력이 수반되는 초과감사보수에 감사보수(시간)모형으로 통제되지 않는 개별 기업 특유 감사원가요인 내지는 위험 요인(idiosyncratic audit cost or risk)이 있을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 V. 요약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감사인이 받는 초과감사보수의 성격을 추가적인 감사노력 투하여부에 따라 실증

4) <표 6>에서 연구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는 Francis et al.(2005)에서 본질적 영업위험 요인들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예상 부호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관되므로 지면관계상 통제변수와 관련된 기술은 생략한다.

분석함으로써 최근의 연구들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초과감사보수의 성격에 대한 실증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감사인이 초과감사보수를 받는 경우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하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추가 노력이 수반되는 초과감사보수가 감사관련 기업특유 요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지에 대한 시사점(implication)을 제시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이 초과 감사보수를 받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하하는 구간에서 초과 감사보수와 재무보고의 질(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발생액의 질) 간의 관계는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초과 감사보수가 경제적 유대 관계이외에도 추가적인 감사 생산원가, 감사위험과 같은 감사보수(시간)모형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특유 감사원가 내지는 위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그간 우리나라 회계감사 연구에서 비정상보수와 시간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는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의 원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특히 초과감사보수가 감사품질을 의미하는지, 경제적 유대관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감사보수 모형 등에서 포착될 수 없는 특유 감사요인(원가나 위험)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실증결과의 해석상 한계점도 갖는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 감사보수의 형성원인별로 구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실증 분석한 결과는 아니다. 특히 초과감사보수 부분을 경제적 유대관계와 특유 감사요인(원가나 위험)으로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각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실증 분석을 한 결과이므로 확인적 해석이라기보다는 유추적인 측면이 많다. 특히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는 감사인이 받는 초과감사보수를 경제적 유대관계가 적은 초과감사보수일 것을 전제로 실증분석을 하였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감사시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국외 연구와 달리 추가 노력과 초과 감사보수를 모두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연구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향후 비정상감사보수의 속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김명인 · 정민경 · 선우혜정.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비감사보수가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 —Khan and Watts(2009) 모형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49권 : 173—200.
- 마희영 · 박성종 · 허광복 · 이만우. 2012. 비정상 감사보수 및 비정상 감사시간이 감리지적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30권 제2호 : 91—113.
- 박종일 · 박찬웅. 2007. 비정상 감사보수와 감사품질이 비정상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45호 : 119—159.
- 박종일 · 최 관. 2009. 비정상적인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채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제10권 제3호 : 265—301.
- 오광욱. 2015. 속성별 발생액의 질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정도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회계정보연구 제33권 제4호 : 33—59.
- 윤성만 · 박진하. 2013. 채권시장은 감사인의 비정상감사보수를 인식하는가? : 비정상감사보수와 회사채 스프레드를 중심으로.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57호 : 267—298.
- 전규안 · 박종일. 2016. 감사인이 인지한 비정상 감사시간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5권 제1호 : 35—66.
- Ball, R., Jayaraman, S., & Shivakumar, L. 2012. Audited financial reporting and voluntary disclosure as complements : a test of the confirmation hypothesi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3(1—2) : 136—166.
- Becker, C.L., DeFond, M.L., Jambalvo, J., Subramanyam, K.R.,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1) : 1—24.
- Bell, T. B., Doogar, R., & Solomon, I. 2008. Audit labor usage and fees under business risk auditing.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6(4) : 729—760.
- Bell, T. B., Landsman, W. R., & Shackelford, D. A. 2001. Auditors' perceived business risk and audit fees : Analysis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9(1) : 35—43.
- Caraminis, C. and C. Lennox., 2008. Audit Effort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45 : 116—138.
- Chaney, K. P., D. C., Jeter. and L. Shivakumar. “Self—Selection of Auditors and Audit Pricing in Private Firms”, *The Accounting Review* Vol. 79, 2004 : 51—72.
- Chen, F., O—K. Hope, and Q. Li. 2011. “Financial Reporting Quality and Investment Efficiency of Private Firms in Emerging Markets” *The Accounting Review*, Vol 86 : 1255—1288.
- Chen, L. H., D. S. Dhaliwal, and M. A. Trombly. 2008. The Effect of Fundamental Risk on the Market Pricing of Accrual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and Finance*, Vol 23 : 471—492.

- Choi, J.H., Kim, J.B. and Zang, Y. 2010. Do Abnormally High Audit Fees Impair Audit Quality?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9 : 115–140.
- DeAngelo, L.E. 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 (December) : 183–199.
- Dechow, P. and I. D. Dichev, I. 2002. “The quality of accruals and earnings : the role of accrual estimation Errors. *The Accounting Review*, Vol 77 (Supplement) : 35–59.
- DeFranco, G., S. P. Kothari, and R. S. Verdi. 2011. “The Benefits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49 : 895–931.
- DeFond, M.L., Raghunandan, K., Subramanyam, K.R., 2002. Do non—audit service fees impair auditor independence? Evidence from going concern audit opin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0(4) : 1247–1274.
- DeFond, M.L. and J. Zhang 2013., A Review of Archival Auditing Research. *Journal of Economics*, Vol 58 : 275–326.
- Doogar, R., P. Sivadasan and I. Solomon. 2015. Audit Fee Residuals : Cost or Rent?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Vol 20 (4) : 1247–1286.
- Ettredge, M., & Greenberg, R. 1990. Determinants of fee cutting on initial audit engage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8(1) : 198–210.
- Francis, J.R. and Wilson, E.R., 1988. Auditor changes : a joint test of theories relating to agency costs and auditor differentiation. *The Accounting Review* 63 (4) : 663–682.
- Francis, J., LaFond, R., Olsson, P., and K. Schipper. 2005. The market pricing of accruals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9 : 295–327.
- Frankel, R., M. Johnson, and K. Nelson. 2002. The relation between auditors’ fees for nonaudit services and earnings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77 Supplement : 71–105.
- Ghosh, A. and Moon, D. 2010. Corporate debt financing and earnings quality. *Journal of Business Finance and Accounting* 37 (5/6) : 538–559.
- Higgs, J. L., and T. R. Skantz. 2006. Audit and nonaudit fees and the market’s reaction to earnings announcement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5 1 : 1–26.
- Hribar, P., Kravet, T., & Wilson, R. (2014). A new measure of accounting quality.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9(1) : 506–538.
- Hope, O–K., Kang. T., Thomas, W.B. and Yoo, Y.K. 2009. Impact of Excess Auditor Remuneration on the Cost of Equity Capital around the World.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and Finance*, 24 : 177–210.
- Hope, O. K., and Langli, J. 2010. Auditor independence in a private firm and low litigation risk setting. *The Accounting Review*, 85(2) : 573–605.

- Jensen, M.C., Meckling, W.H., 1976. Theory of the firm :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4) : 305–360.
- Jones, J. J. 1991. Earnings Management during Import Relief Investiga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 (2) : 193–228.
- Khalil, S., Magnan, M.L., Cohen, J.R., 2008. Dual–class shares and audit pricing : Evidence from the Canadian market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7(2) : 199–216.
- Kim, D., and Y. Qi. 2010. Accruals quality, stock returns, and macroeconomic conditions. *The Accounting Review* 85 : 937–978.
- Kinney, W. R., Jr., and R. Libby. 2002. Discussion of the relation between auditors’ fees for nonaudit services and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7 Supplement : 107–114.
- Lennox, C., J. R. Francis and Z. Wang., 2012. Selection Model in Accounting Research. *The Accounting Review* 87(2) : 589–616.
- Levitt, A. 2000. Speech by the SEC chairman at New York University center for law and business : *Renewing the Covenant with Investors*.
- O’Keefe, T. B., Simunic, D. A., & Stein, M. T. 1994. The production of audit services : Evidence from a major public accounting firm.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2(2), 241–261.
- Srinidhi, B. N., & Gul, F. A. 2007. The differential effects of auditors’ non–audit and audit fees on accrual quality.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4(2) : 595–629.
- Watts, R., 1977.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A product of the market and political processes. *Australian Journal of Management* 2 : 53–75.

# Empirical Study on Relation between Abnormal Audit Fees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Using Audit Efforts Residuals - Implication of Excessive Audit Fees -

Kwang Wuk Oh\*

— <Abstract> —

The study investigates the property of abnormal excessive audit fees using large samples in Korea listed firm. Specifically, the study shows the empirical results about ① relation between excessive abnormal audit fees and excessive audit efforts and ② tests the property of excessive abnormal audit fees by examining the direction between excessive abnormal audit fees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such as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nd accruals quality) by grouping the sample with abnormal audit efforts.

Following are the results : First, tests show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excessive abnormal audit fees and efforts, implying that excessive abnormal audit fees may include extra risk premium and efforts inducing audit inefficiency. Second, tests show that excessive abnormal audit fees have the negative relation with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n the sub-sample firms which auditors put excessive audit efforts. These results consistently supports the argument by Higgs and Skantz (2006) that excessive abnormal audit fees may be composed of both auditor rents and unobserved audit costs(risks).

<Key words> Abnormal Audit Fees, Abnormal Audit Efforts,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ccruals Quality

---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Global Business, Korea University(Sejong Campus), avnini92@korea.ac.kr